

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[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·육성하여
충청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
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·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(안 제4조)

다.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협의회 설치·운영 등(안 제5조 ~ 안 제6조)

라. 토종농작물 사업지원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안배경

- 기후변화, 식량위기와 감염병 위기 등으로 농업과 먹거리에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 세계 종자 시장의 70% 이상을 외국기업이 차지하고 있어, 종자수입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있고, GMO(유전자변형) 농산물 등 각종 품종개량 농산물이 국민의 식탁을 차지하고 있음
- 대안으로 농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토종종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, 토종종자에 관한 관심 부족과 정책적 지원방안의 부재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⁹⁾
- 따라서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·입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본칙 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**안 제3조**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
9) 대표발의한 김국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, 제40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으며,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정책실현을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였음

- **안 제4조**는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을 위해 토종농작물 신태조사, 종자 생산 및 보급, 판매 및 소비 촉진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- **안 제5조와 안 제6조**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·육성·생산 등의 심의·자문을 위해 민·관정책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
 - 협의회 구성이 농업기술원, 농산사업소 등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토종농작물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,
 - 협의회를 통해 토종농작물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지원, 육성계획의 수립과 종자 지정 및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도록 함
- **안 제7조**는 도지사가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, 관련 농업인등에 대하여 생산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 - 특히, 토종종작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터, 각급 학교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,
 -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및 시료보관을 위한 종자은행 시설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토종농작물 농업인 등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,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임

○ 그 밖에 타 시도의 입법례는 아래 표와 같음

〈표〉 타 시도 토종농작물 관련 입법례(제정순)

연번	조례(시행규칙)명	제정일	개정일
1	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	2008. 7. 3.	2016. 12. 29.
	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	2008. 11. 13.	2022. 8. 4.
2	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	2011. 10. 20.	2017. 6. 20.
3	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	2012. 12. 31.	2021. 5. 20.
4	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	2014. 5. 16.	2018. 7. 13.
5	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	2014. 10. 21.	2022. 12. 30.
6	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	2016. 9. 30.	2022. 10. 18.
7	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	2016. 11. 4.	2022. 11. 4.
8	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	2017. 10. 19.	-

- 17개 시도 중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8개 광역도에
서 조례를 제정·시행 중이며, 모두 2017년 이전에 제정, 최
근까지 개정을 통해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- 그러나 충북도는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조례가 없어, 충북도
가 토종농작물 보존·육성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유추할 수
있음
- 지금이라도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
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, 세계종자전쟁과 GMO 농산물의 위협에 노출된 현실에서 충북도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 재배되어 온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, 육성하여 충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
- (타당성)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관한 입법목적과 그 내용이 타당하며, 조례의 제정은 토종종자 및 식량 주권 유지와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, 소비자 먹거리 안전기반 구축 등 의미가 있음
- (법적합성) 관계 법령 위배 또는 저촉 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늦게 입법화됨에 따라 속도감 있고, 내실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함